

안전한 도시철도, 편리한 교통서비스



서울교통공사

수신자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2017년 8월 법률상식 연재 알림

1. 관련근거

- 가. (구)서울메트로 총무처-8100('16.11.21) 『2017년 경영목표 및 사업계획 제출』
- 나. (구)서울메트로 총무처-379('17.01.10) 『2017년 소송현황 보고』

2. 최근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질서저해자의 폭행행위 등과 관련하여 고소·고발 문제가 대두되는 바, 2017년 8월 법률상식 연재로 『고소·고발 요령 및 무고죄 성립의 이해』를 선정하여 고소·고발 요령 등을 알리오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주요내용

- 고소·고발 근거 법령 및 차이점
- 고소·고발 요령
- 무고죄 성립의 이해

- 붙임 : 1. 고소·고발 요령 및 무고죄 성립의 이해 1부.
2. 고소·고발장 양식 1부. 끝.

법무처장

수신자 가1~가51, 나1-2, 다1, 마27, 아1-3, 나1-아19, 나1-아19

주임 황소영

부장 최인수

처장 08/31
엄익철

협조자 부장 김문규

시행 법무처-1531 (2017.08.31.) 접수

우 04806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/http://www.seoulmetro.co.kr

전화 02-6311-9089 전송 02-6311-4288 / youngs611@seoulmetro.co.kr / 대시민공개

부패 '0'의 공기업! 청렴이 우리의 경쟁력입니다. 인사 이권청탁 배격